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104305
결재일자	2015.7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 주 무 관	장애인시설팀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복지장	
김태령	이근동	김성복	07/13 오영수	
협 조				

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계획

- 목 적 :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부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
- 근 거 : 보건복지부 「비정상의 정상화 과제」 로 지정 추진
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(2015. 7. 7)
- 점검기간 : 2015. 7. 20 ~ 8. 8(20일간)
- 점검대상 :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3개소
- 점검방법 : 구·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점검 실시
- 점검항목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, 불법주차 등 12개 항목

**주민생활복지국
(사회복지과)**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근거	<input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)	
사업추진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	
	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 확보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 탐 조 ()
이해관계인 유무	<input type="radio"/> 주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input type="radio"/>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자 원 활용가능성	<input type="radio"/>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input type="radio"/>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input type="radio"/>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input type="radio"/>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 필 요 성	<input type="radio"/> 홍보대상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	<input type="radio"/> 보도자료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

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계획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·민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

❏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불편 초래

- 주차 표지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,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주차와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·변조하여 불법사용
 - 14년도 합동점검 결과, 불법주차 중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비장애인차량, 보행 장애인 미탑승(상반기 93.5%, 하반기 97.2%)으로 나타남
 - ※ 표지 위·변조, 주차방해 등 사례도 발생

❏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

- 14년도 합동점검 시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, 의료시설,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합동점검 실시
-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범범의식 부재
 - 특히, 주차표지를 보유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필요
 - ※ 장애인 가족의 경우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관련

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사항

●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합동점검 실시

- ◆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
- ◆ “장애인전용주차구역”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제도강화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

II 추진 계획

■ 점검개요

- 점검기간 : '15. 7. 20. ~ 8. 8(20일간)
- 대상시설 :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3개소(서울시에서 선정)

공공기관(9개소)	민간시설(3개소)
상도3동 주민센터, 동작교육청, 국립현충원, 동작보건소, 동작우체국, 남부장애인복지관, 흑석체육센터, 사당문화회관체육관, 서울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체육관	중앙대학교 병원, 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, 상도더샵(아파트)

- 점검방법 : 구·민간시설 합동점검 실시
- 점 검 반 : 구청(사회복지과) 1명,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1명
- 점검항목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, 유효폭 확보, 규모, 높이차 유무, 불법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(12개 항목)
 - ※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(붙임1)
- 점검시간 : 시설별로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 점검
 - ※ 일정시간(개소당 약 1시간) 동안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
(단, 편의센터 자체 점검 시 증거자료 확보하여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)

● 점검방법

구청 공무원과 편의센터 합동 점검 시	편의센터 자체 점검 시
① 붙임1. 체크리스트의 일반사항 점검완료 후 ② 불법주차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함께 나온 사진 촬영 (사진주차가능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사진 1장, 차량 및 번호판과 주차구역이 나온 사진 1장, 촬영시각을 확인가능할 것)	
③ 사진 촬영 후 '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*'발부 *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 : 자치구 고유 양식	③ 사진 촬영 후 주차위반사실 계고장(붙임4) 발부 ④ 근거자료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·신고

※ **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나타난 경우** : 불법 주차 확인 후에 위반 행위자가 도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과태료고지서 발송 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

※ **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** : 「과태료부과 통지서」(합동점검 시) 또는 「주차위반사실 계고장」(자체점검 시)을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발부, 위 표지가 붙은 해당 차의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

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계도 및 홍보

- 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” 전단지 인쇄·배포, 방송 등을 통한 계도 실시
 - 공공기관, 민간시설 : 안내문·전단지 배포 계도
 - 공동주택(아파트) : 안내문·전단지 배포 계도, 홍보방송 지속실시
- 구 소식지, 일간지 게재 홍보
- 통·반장, 직능단체회의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

Ⅲ

행정사항

■ 사전 홍보 및 계도

- 합동 점검기간 이전 일정기간(약 1주일) 지역 소식지, 방송, 통·반장회의, 인쇄물, 안내문 게재(아파트 등)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계도 실시

■ 구·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 실시

■ 결과보고

● 구 : 홍보실적만 제출

- 자체 홍보실적을 '15.7.30.(목)까지' 서울시로 제출
 - ※ 보도자료, 인쇄물, 전광판, 통·반장 회의, 안내문 게재(아파트 등) 등 홍보 실적 일체 (총 홍보건수를 기록하고 사진자료 첨부하되, 별도의 보고형식 없음)
- 구청에서 붙임2의 위반건수에 대한 과태료 최종 부과액 자료를 지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서울지원센터에 통보

● 편의시설지원센터 : 붙임1, 2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

- 각 기초센터는 '15.8.26.(수)까지 서식 '붙임 1'에 맞춰 작성하고, 점검사진과 함께 점검결과를 광역센터 및 관할 지자체에 보고
 - ※ 합동점검 대상시설을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

<붙임 1> 기초센터 현장 점검용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(시설별)

<점검대상시설명 : _____ 일시 : 2015년 __월 __일 __시__분 ~ __시__분 >

<시설유형 : 1.행정 2.공공 3.복지 4.문화 5.운동 6.교육 7.업무 8.의료 9.판매 10.숙박 11.휴게 12.아파트>

※ 해당 유형에 체크

장애인전용주차면 일반 점검 사항

연번	점 검 항 목	①적정	②부적정
1	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		
2	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		
3	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(폭 3,3미터 이상, 길이 5미터 이상,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, 길이 6미터 이상)		
4	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		
5	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		
6	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(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)		
7	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(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) * a :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, b : 현재 면수	a :	b :

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

연번	점 검 사 항	위반건수	
		복지부 발행표지	보훈처 발행표지
※8	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(주차표지를 부착했다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,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)		
9	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(주차표지를 부착했다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, 주차불가표지 차량)		
※10	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(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)		
11	비장애인차량(주차표지 없는 차량)		
12	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		
계			

※ 8번, 10번은 현장 확인 불가하므로 추후 확인(사진촬영 포함)

< 점검자 >

소속	성명	서명

<붙임 2> 광역센터 취합용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점검결과

점검 결과(총괄)

연번	점검 항목	a+b	적정(a)	부적정(b)
1	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			
2	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			
3	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(폭 3,3미터 이상, 길이 5미터 이상,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, 길이 6미터 이상)			
4	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			
5	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			
6	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(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)			
7	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(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사전 확보)			

※ a+b : 해당시도의 전체 점검시설 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
위반 유형별 현황

<단위 : 건수 >

계	8. 표지 위·변조	9. 장애인 비탈승 주차불가표지	10. 주차표지 불법대여 등	11. 비장애인차량	12. 주차방해

* 점검결과 위반차량 현황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

제출·신고건수(위반건수)

지역구분		위반건수	부과금액(천원)	비고
시도	시군구			

위반 현황

구분	행정기관			공공기관			노유자시설			문화시설			운동시설			교육연구시설		
	1	2	3	1	2	3	1	2	3	1	2	3	1	2	3	1	2	3
하단 참조	업무시설			의료시설			판매시설			숙박시설			관광휴게시설			공동주택		
	1	2	3	1	2	3	1	2	3	1	2	3	1	2	3	1	2	3

- ※ 1. 점검을 실시한 총 시설 수
- 2. 해당시설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면수(체크리스트의 7번 b)
- 3.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건 수(체크리스트의 8~12번)

장애인전용주차구역(표지발급 포함) 관련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
(별지 또는 이면)

『장애인전용주차구역』 이용 안내문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‘주차가능’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’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)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‘주차가능’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, ‘주차가능’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‘주차불가’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는 ‘주차가능’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동 작 구 청 장

주차위반사실 계고장

귀하의 차량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**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임**을 알려드립니다.

- NO. _____
- 위 반 일 시 :
- 위 반 장 소 :
- 차 량 번 호 :
- 위 반 내 용 기타 : _____
-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()
 -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()
- 과태료 부과금액 : 10만원 (동법 시행령 제13조)
- 문의전화 : 0000-0000-00000

동작구청장

주차위반사실 계고장

귀하의 차량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**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임**을 알려드립니다.

- NO. _____
- 위 반 일 시 :
- 위 반 장 소 :
- 차 량 번 호 :
- 위 반 내 용 기타 : _____
-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()
 -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()
- 과태료 부과금액 : 10만원 (동법 시행령 제13조)
- 문의전화 : 0000-0000-00000

동작구청장

<붙임 5>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

1. 보건복지부 발행 : 본인용·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

기능의 구분			명 의 자	
			본인	보호자
기본 A형	보행장애	유		
		무		
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	보행장애	유		
대여 및 리스차량 C형	보행장애	유		
		무		
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	보행장애	유		

2. 국가보훈처 발행 :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표지

구분		주차가능	주차불가
국가 유공 자	기존형		
	개선형		
5·18 민주 유공 자	기존형		
	개선형		
참전 고엽 제	기존형		

<p>참전 고엽 제</p>	<p>개선형 1</p>		
	<p>개선형 2</p>		
<p>독립 유공 자</p>	<p>기존형</p>		-
	<p>개선형</p>		-